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84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298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 등 분리(안 제5조)	3

I.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298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4. 8. 20.

다. 회 부 일 : 2024.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 등 분리(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 ----- <u>2월 말까지</u> ----- -----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비축 신청된 토지를 비축대상토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 제1항 및 제4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⑦ ----- 제1항----- ----- ----- ----- ----- ----- -----.

현행	개정안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현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이라 함) 제5조제4항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이하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이라 함)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 제6조²⁾에는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 조사”라 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이하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라 함)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기 ‘토지비축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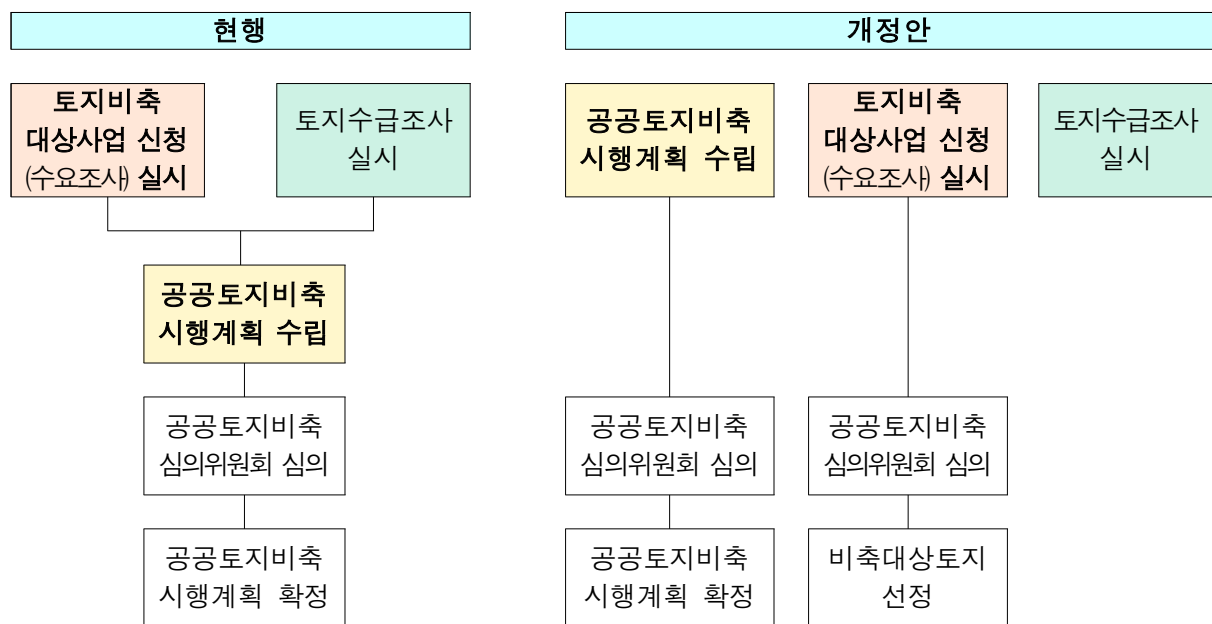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신청'과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과 토지수급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분리하려는 것으로, 변경되는 절차는 다음 도식과 같음.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 및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 변경안 〉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 분리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른 공공토지 비축제도³⁾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 법 제9조⁴⁾에 따른 토지은행에 비축하고 비축토지를 사업시행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가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보상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시 저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러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2009년 제도 시행⁵⁾ 이후 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를 공급하여 공익사업의 적기 시행을 뒷받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로써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보상비의 10.4%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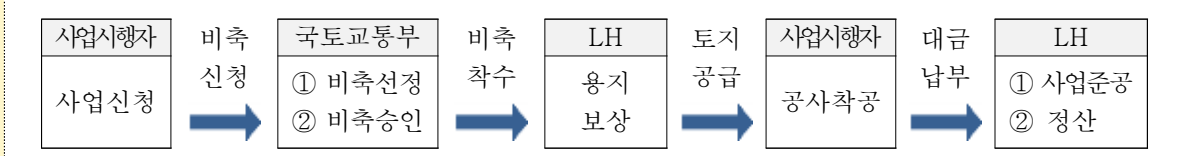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 5) 2009년 시행 이후 2024년 9월말까지 79개 비축사업을 승인(약 4.2조원)하였으며 3.4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 중임.

〈 공공토지 비축제도 개요 〉

-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용지 공급
-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대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
- (재원) 토지은행적립금, LH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
- (회계) LH에 토지은행 계정 설치(LH 고유계정과 구분 운영)
- (공급가격) 비축사업에 소요된 직·간접비를 포함한 원가
- (운영) 사업시행자의 신청, 국토교통부 승인, 토지은행(LH) 보상, 사업시행자 분할납부, 준공·정산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절차 >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시행계획이 객관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토지비축 목표 및 비축대상토지 등⁶⁾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 시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법 제5조제5항7)에 따라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결과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함)8)의 심의를 거쳐야 비축대상토지로 확정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 이후부터 시행계획의 수립이 완료되기까지의 12월~2월 기간으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별로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말·연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다음연도의 수요조사까지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와 토지비축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비축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시행계획에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체계임.

따라서,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상시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하더라도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3월부터 차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사실상 토지비축 대상사업 선정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현행 제도로는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사업실적 제고에 한계⁹⁾가 발생함.

둘째,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행계획 확정이 지체되고 토지은행의 예·결산 사항 등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도 아울러 지연될 수 있음.

9) 2023년의 경우 1개 기초단체만 토지비축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였으며, 통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원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국한하여 신청을 하고 있음.

현행법상 시행계획¹⁰⁾뿐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토지비축위원회는 상시 개최가 가능하나, 시행계획이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행계획 심의를 제외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토지비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실익은 크지 않음.

실제로 토지비축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시점에 맞춰 연 1회 개최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고, 해당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시행계획과 함께 토지은행의 예·결산 사항 등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이 일괄 심의·의결되고 있음.

그런데,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결과가 저조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행계획 수립 기한이 도과되고 이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도 함께 지연되는 사례¹¹⁾가 반복되어 왔음.

이는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이나, 법률에서 정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위반하고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형식화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¹²⁾이 제기된 바 있음.

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1) 토지비축위원회 연도별 개최 시기 현황: ('19) 3월, ('20) 5월, ('21) 3월, ('22) 6월, ('23) 12월

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토지 비축제도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

이에 개정안은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를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분리하여 각 절차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로써 법에서 정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 준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공 토지 비축제도의 사업실적도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국토교통부도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2024년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과 토지비축 대상사업 수요조사 절차가 분리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활해지고 토지비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비축대상토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제5조제4항 및 제5항¹³⁾에서 규정하는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절차는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분리되어 제5조에는 시행계획과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 두 가지 사항이 함께 규정되게 되는데,

현행법 제5조의 조 제목(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제5조

영되고, 공공토지비축에 대한 시행계획 및 토지은행 예·결산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의결하였음.

의 조 제목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토지비축 대상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5조제4항·제5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는 입법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토지수급조사 절차 분리

현행 「공공토지비축법」 제4조제3항¹⁴⁾ 및 제5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13) 개정안에 따른 제5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비축 신청된 토지를 비축대상토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런데, 안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선행 절차인 토지수급조사가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절차로 기능하게 됨.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체계상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6조제1항15)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 토지수급조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5조제3항16)에 따라 토지수급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해당연도의 토지수급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반영되더라도 현행 제도의

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토지수급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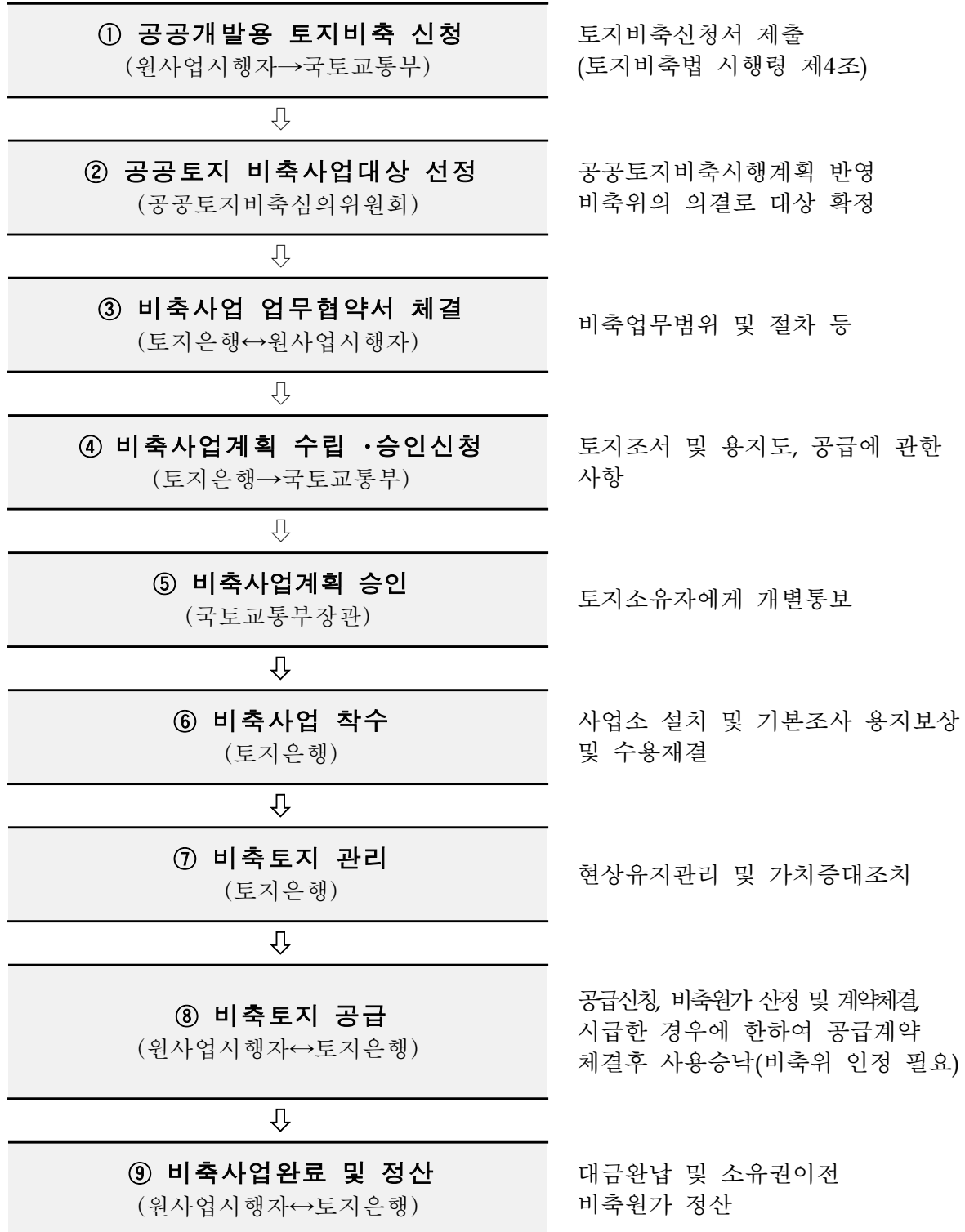
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현행 제도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 제5조제5항에 따르면 토지수급조사의 선행 절차 없이도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1

토지은행의 토지비축업무 사업추진 절차



참고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 지구 (개수)	승인현황		취득 실적		공급실적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합계	82	36,770	44,596	27,871	35,194	26,103	32,316
'09년	18	23,362	17,008	-	15	-	-
'10년	6	2,447	3,293	1,836	2,197	-	-
'11년	-	-	-	3,120	4,025	3,712	4,238
'12년	1	2,326	799	3,936	3,424	3,788	3,545
'13년	2	637	324	5,995	3,986	6,486	5,040
'14년	-	-	-	6,563	2,520	6,854	3,544
'15년	-	-	-	522	786	859	1,340
'16년	-	-	-	146	298	370	691
'17년	2	232	2,941	2,142	3,516	2,178	3,463
'18년	-	-	-	501	2,437	396	1,446
'19년	3	223	1,100	63	390	146	1,157
'20년	23	1,167	6,442	133	711	118	748
'21년	13	1,095	3,438	559	3,216	89	170
'22년	4	1,983	3,881	558	4,504	369	2,234
'23년	7	951	2,339	1,048	2,317	618	2,107
'24년(9월)	3	2,347	3,031	749	852	120	2,593